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이재옥 우리 협회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목 차

1. 서언
2.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3. 공사감리부분
4. 견실시공 풍토조성
5. 기술적 기준의 제정
6. 시설물의 유지관리
7. 부실공사의 처벌의 강화
8. 결언(앞으로의 개선방향)

1. 서언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1970년대 해외건설진출과 내수의 급증으로 양적으로는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성능유지에 대한 기술개발 등에는 매우 소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신행주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구조물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항간에는 '건설산업' 하면 우선 부실을 연상할 만큼 건설산업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은 외국에 나가서는 우수한 시공을 하여 국제적으로 시공기술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비현실적인 입찰계약제도나, 무질서한 하도급 거래 및 불합리한 설계·감리와 더불어 기술자의 적당주의 관행이 있어 부실공사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에 대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법 등 건설관련법령을 대폭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설계·감리분야는 각국 건설업의 경쟁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이다. 시설물의 질을 높이고 기술발달과 건설안전문화의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가 이 분야 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건설업의 당면과제는 당연히 이들 낙후 분야를 선진화시키고 경쟁력



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내외적으로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건축설계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1.5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 제도를 대폭개선하였다.

1) 우선 건축사자격 취득제도를 개선하여 설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사 1차시험제도를 건축사예비시험제도로 바꾸어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1차시험을 다시 보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5년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력을 쌓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건축사시험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학력위주제도에서 벗어나 실무경력을 중시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가 건축사가 되도록 하였다.

2) 외국건축사도 국내에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없었으나, 1996.1.1일부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건축설계업체가 외국업체와의 경쟁속에서 국제수준에 걸맞는 기술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3. 공사감리부분

1) 건축공사의 감리제도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1963년도 건축사법의 제정·시행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건축법령,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이 건축사의 설계의지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시공자 등을 지

도·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종전에는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만 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위법·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95.1.5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시공자가 위법·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감리자는 공사중지·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또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시공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

2) 공공건축물의 공사감리

그동안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크고 작은 부실공사를 근절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여 왔으나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로 획일적으로 정하여 공사의 난이도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감리시장의 확대로 시공업체나 설계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가 감리업체로 대폭 진출하여 기술자 수급의 불균형과 부실감리 위험성이 증대되어 1997.7.21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책임감리대상공사를 5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종으로 하였고, 의무화 대상공사가 아니더라도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수급 및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각 공사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규정하여 책임감리대상공사의 범위를 합리화 하였다.

3)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공항청사·철도역사·판매시설·종합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등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사감리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건축사의 감리허용)가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
 터미널·종합병원등과 16
 층 이상인 건축물

4. 견실시공 풍토조성

1) 건축공사시 관계기술자 협력강화

대규모 토지굴착공사·옹벽공사 등을 수반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토목분야 기술자의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건축공사에 참여한 관계기술자의 책임한계 등도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대규모 토지굴착공사·옹벽공사 등을 수반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시 토목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설계·감리에 참여한 관계전문기술자는 설계도서·감리보고서 등에 반드시 서명·날인 하도록 제도화 하여 건축관련 전문기술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업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2) 소규모 건축물 시공자 책임강화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

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의 자격을 현장관리인으로 규정하고 현장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였다.

5. 기술적 기준의 제정

건축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민간의 기술신장과 국제경쟁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직과 연구능력이 있는 건축관련 전문단체에서도 동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신공법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

1990년대의 창선대교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의 붕괴사고는 견실시공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완공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공항·철도·아파트·민간건축공사 등 전국 주요 공사현장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재시공 등 시공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1995.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체계화 하여 교량·터널·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



상의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1·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제도도 도입하였다.

* 21층 이상,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건축물 등 제1종시설물은 완공후 10년후부터 5년에 1회 이상 기술사 등 일정자격이 있는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7. 부실공사의 처벌의 강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분에 중대한 훼손을 야기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공사감리자, 시공자 등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

8. 결언(앞으로의 개선방향)

지금까지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분야에 있어서 건설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자발적이고도 유기적인 노력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에 투명성을 부여하여 정당한 경쟁에 의한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고 건

설관련 정보도 조기에 공급될 수 있는 전산체계 등을 구축하여 건설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초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형 및 기술집약적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괄입찰시행토록 하고, 공사비 책정방식을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방식에서 실비 가산방식·가격협상방식으로 전환하여 설계·시공 입찰방식을 개선하며

둘째, 설계등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사전 입찰평가제(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형공사 등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셋째,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의 규제방식을 당사자간 계약사항 또는 전문가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술적 사항 강화하는 등 각종 건설법령에 관한 국제수준을 개편하고

넷째,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기획에서 설계·시공·유지 관리까지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발주청·건설업체·용역업체 등이 공유·연계하는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망(건설 CALS)을 구축하여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간의 정보를 교환·공유하도록 하여 건설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하도록 하여 안전한 시설물의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